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29일, 김기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4. 12. 3.)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2. 2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기표)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1. 총액에 관한 정보제공 실태점검·개선명령 및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안 제62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항공사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제공 실태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 ⑥ (생 략)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해당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제공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7항

현 행	개 정 안
	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⑪ (현행 제7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현행법 제62조제5항[1]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2]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1)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총액에 관한 정보제공을 미흡하게 한 사례가 있어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실정임.

【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사례 】

구분	항공사	위반내용	구분	항공사	위반내용
1	제주항공	'16.7월, 기본운임만 표시	14	에어로몽골리아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2	에어서울	'18.7월, 기본운임만 표시	15	에어마카오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3	에어부산	'18.12월, 기본운임 표시, 하단에 작은	16	하문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⑩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항공사	위반내용	구분	항공사	위반내용
		글씨로 편도총액 표시			
4	티웨이	’19.4월, 기본운임만 표시	17	길상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5	이스타	’19.4월, 기본운임만 표시	18	타이거에어 타이완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6	제주항공	’19.5월, 기본운임 표시, 하단에 작은 글씨로 편도총액 표시	19	미얀마 국제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7	제주항공	’22.4월, 기본운임만 표시	20	그레이터베이 항공	’24.9월, 총액 미표시,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8	티웨이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21	라오항공	’24.9월, 총액 미표시
9	에어로케이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22	루프트한자 항공	’24.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10	이스타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23	말레이시아 항공	’24.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11	뱀부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24	에어재팬	’24.9월, 총액 미표시
12	비엣젯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25	춘추항공	’24.9월, 총액 미표시
13	스쿠트 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26	피치항공	’24.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2)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에 대한 실태점검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62조제7항에서 그 정보제공 실태에 대하여 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도입(2015년) 이후 2016년부터 불시 실태점검을 수행하였다는 설명으로, 최근에는 2023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정보제공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음[3].

3)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안 제62조제7항은 정보제공 실태점검뿐만 아니라 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동조 제8항 및 제9항은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및 이행상태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항공사업법」제27조[4]는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

---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2023.9.6.),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2024.10.3.)

4) **「항공사업법」**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6.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5.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6.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5]는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선명령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시점검 결과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 미흡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설명임.

【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미흡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구분	항공사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	제주항공	'16.7월, 기본운임만 표시	150만원 * 1/2감경 : 1차위반
2	에어서울	'18.7월, 기본운임만 표시	300만원
3	에어부산	'18.12월, 기본운임 표시, 하단에 작은 글씨로 편도총액 표시	150만원 *1/2감경 : 총액금액을 표시한 점과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는 점 고려
4	티웨이	'19.4월, 기본운임만 표시	150만원 * 1/2감경 : 1차위반
5	이스타	'19.4월, 기본운임만 표시	150만원 * 1/2감경 : 1차위반
6	제주항공	'19.5월, 기본운임 표시, 하단에 작은 글씨로 편도총액 표시	300만원
7	제주항공	'22.4월, 기본운임만 표시	200만원 * 1/2감경 : 시정조치 완료
8	티웨이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200만원 * 1/2감경 : 1차 위반
9	에어로케이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⑨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5)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62조 제5항(제60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구분	항공사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0	이스타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200만원 * 1/2감경 : 1차 위반
11	뱀부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12	비엣젯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13	스쿠트 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14	에어로몽골리아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15	에어마카오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16	하문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17	길상항공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18	타이거에어 타이완	’23.9월. 기본운임만 표시	
19	미얀마 국제항공	’23.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20	그레이터베이 항공	’24.9월, 총액 미표시,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200만원 * 1/2감경 : 1차 위반
21	라오항공	’24.9월, 총액 미표시	
22	루프트한자항공	’24.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23	말레이시아항공	’24.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24	에어재팬	’24.9월, 총액 미표시	
25	춘추항공	’24.9월, 총액 미표시	
26	피치항공	’24.9월, 편도/왕복 여부 미표시	

자료 : 국토교통부

4)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안 제62조제10항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하려는 항공사 등을 선택할 때 그 판단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항공사 등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조치로 보임.

5) 준용규정에 대한 검토

현행 제60조제12항[6]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7]에 대하여 제62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실태점검(안 제62조제7항) 등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

다.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항공운임 총액 정보 제공을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에는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사업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16년부터 수시 실태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중으로 새로운 규제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6) 「항공사업법」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8.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참고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피치항공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선명령 기준에 총액표시 위반 및 편도·왕복 미표시 여부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경미한 실수에 의한 시정조치의 경우는 홈페이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